

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- 가. 발 의 자 : 김창원 의원(찬성자 40명)
- 나. 의안번호 : 제 182 호
- 다. 발의일자 : 2018. 10. 17.
- 라. 회부일자 : 2018. 10. 29.

2. 제안이유

- 스마트폰과 전자기기의 대중화로 시민들이 보행 중에도 각종 전자기기를 이용하면서 보행자와 보행자간의 충돌 및 각종 사고로 이어지면서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. 이에 따라 청계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행정지도 사항에 ‘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 행위’를 포함하고, 행정지도 대상 행위를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 행위를 행정지도 대상으로 규정함(안 제11조제1항제9호 신설).
- 나. 행정지도 대상 행위를 표시한 안내표지판 설치의 의무화(안 제11조제2항 신설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의견

■ 개요

- 본 개정안은 보행 중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전자기기를 이용하면서 보행자 간의 충돌 등의 사고가 이어져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,
- 청계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 행위를 본 조례 제11조1)에 따른 행정지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, 행정지도 대상 행위를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청계천 출입구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.

[표 1] 개정안 조문대비표(안 제11조재1항 및 제2항)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행정지도) 시장은 시민의 안전 및 공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. 1. ~ 8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11조(행정지도) ① 1. ~ 8. (현행과 같음) <u>9.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으로 다른 사람의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</u> <u>② 시장은 제1항의 행정지도 대상 행위를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청계천 출입구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.</u>

- 1) 제11조(행정지도) 시장은 시민의 안전 및 공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.
1. 낚시행위 및 유어행위
 2. 수영·목욕 등 이와 유사한 행위
 3.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
 4. 흡연행위 및 음주행위
 5. 노숙행위 및 영업행위
 6. 음식쓰레기 등 폐기물 투기행위 및 방뇨행위
 7. 자전거, 인라인스케이트 등 바퀴가 있는 동력 또는 무동력 장치의 이용행위 (다만, 장애인·유아·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청소·공사·보수 등 청계천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.)
 8. 동물동반 출입행위(다만, 장애인을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견<補助犬>은 예외로 한다)

■ 주요 골자별 의견

가. 행정지도 사항에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행위 추가의 건 (안 제11조제1항제9호)

- 안 제11조제1항제9호는 현행 조례 제11조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행정지도²⁾ 대상에 ‘청계천 내 보행자가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으로 다른 사람의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것임.
-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‘횡단보도’ 보행 시 휴대전화 또는 영상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상정³⁾되는 등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고,
- 지난 3월 7일 서울시의회는 보행환경 개선 차원에서 「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」⁴⁾(의안번호 제

2) 행정지도의 정의

- 행정지도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조제3호에 따라 ‘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, 권고,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’을 말하며,
- 행정지도는 다변하는 행정 분야에 실효적이라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그 주체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의 강제력을 무시할 수는 없고, 다수설에서는 행정지도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으므로 작용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사인의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고 있음.

(자료 : pmg 지식엔진연구소, 2016, ‘시사상식사전’, 박문각

3)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창현의원 등 10인)

- 제안일 : '17.6.12 - 상정일 : '17.11.23 - 상정 결과 : 소위원회 회부
- 주요내용 : 보행자가 횡단보도 횡단 시에는 휴대폰, 영상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- 검토의견 : 보행자의 주의를 분산되고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금지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

4) 제4조(시민의 권리와 의무) ① ~③ 생략

2381호, 공동발의 김창원 의원 외 24인)를 개정하여 시민의 의무 사항에 “모든 시민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”를 추가한 바 있음.

- 또한,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⁵⁾를 살펴보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소리로 사물을 인지하는 거리를 40~50% 감소시키고 전방 주시율은 15% 정도 떨어뜨리는 등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.
- 이에 청계천 내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으로 타인의 보행을 방해할 경우 행정지도를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이용객의 보행안전사고 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.
- 다만, 청계천 내 보행구간이 일반 산책로에 해당한다고 볼 때 다른 산책로와 차별화하여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지도할 경우 또 다른 민원 발생 소지도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- 참고로, 현재 청계천 운영·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은 청계천 내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한 민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또한, ‘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’와 ‘보행을 방해하는 행위’가 너무

④ 모든 시민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.
<신설 2018.3.22.>

5) 이수일·김태호(2016), “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시 시각 인지특성 연구”,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

광범위하고 모호하여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임.

나. 행정지도 대상 행위 안내표지판 설치 건(안 제11조제2항)

- 안 제11조제2항은 청계천 내 행정지도 대상 행위를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청계천 출입구 등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, 청계천 이용 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명시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이용객의 주의를 유도하고 시민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사료됨.
- 다만, 안내표지판의 설치는 시민들이 쉽게 행정지도 대상 행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의 시인성, 가시성, 가독성 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이용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할 것임.